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5
----------	-----

2007년 9월 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07년 8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07. 9. 5.(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술심사담당관 유 길상)

가.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SH공사 등 발주 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함 (안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5조)
- 그 동안의 운영상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조례에서는 금액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함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 기타 2003년 7월 일괄·대안입찰의 심의운영제도가 당초 비공개 방식에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성을 이원화하여 기술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간 토론을 통하여 기술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종합평가하는 공개토론 방식으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먼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2006년 12월 29일자로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제외시킴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는 발주청에서 다른 공사발주 방식보다 텐키방식의 발주를 선호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상위법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나,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에서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임.

또한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토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실상 텐키발주와 동일한 것이며, 실시설계서가 전혀 없어 원안입찰자의 입찰은 거의 불가능한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더욱이 상위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 25일 개정 완료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도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임.

특히 심의수수료의 현실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고, 또 그 납부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닌 공사의 발주기관이나 발주부서이고, 그 범위 또한 동 조례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비지원이나 시비보조금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표 1] 현행 수수료 및 개정안 요약

(단위 : 만원)

구 分	현 행 (조례)	개 정 안		비 고
		조례	규 칙	
○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심의	○ 응찰 업체수 - 2개: 400 - 3~4개: 600 - 5~6개: 800 - 7개이상: 1,000	1,300 ~ 1,700	○ 총공사비 - 500억 미만: 1,400 - 500억 이상: 1,600	500억 이상 3개 업체 응찰 기준 : 267% 인상
○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80	200 ~ 500	○ 총공사비 - 300억 미만: 260 - 500억 미만: 320 - 500억 이상: 380	400억 공사 기준 : 400% 인상
○ 설계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기타 심의	80	80 ~ 100	80	동일함

- 최근 5년간의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은 [표 2]와 같고,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가 추가되어도 심의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고 있음⁹⁾.

또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적정 심의수수료 산정을 [표 3]과 같이 하고 이를 근거로 상하 일정범위를 조례에 규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가. 조례규칙에 위임여부 판단

-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경우 납부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닌 기초단체와 시산하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의의뢰 건수도 많지 아니하여 집행기관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의 결정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재량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2] 최근 5년간('02~'06)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연도별	심의종류	건수	전당 수수료(천원)	금액(천원)	비고
계		32		68,548	
'02	설계심의	1	800	800	서울메트로
'03	설계심의	1	800	800	서울메트로
'04	입찰방법	7	800	5,600	마포구, 강남구, 서울메트로
	설계심의	4	800	3,200	동작구, 서울메트로
	정밀진단	2	800	1,600	마포구
'05	입찰방법	3	800	2,400	양천구, 서울메트로
	설계심의	7	800	5,600	동대문구, 서울메트로
'06	입찰방법	4	800	3,200	광진구, 서울메트로
	설계적격	3	약15,000	45,348	SH공사

* '06년 설계적격심의 비용은 실 소요비용을 부과한 것임

9) 2007년 1월 15일, 공문(기술심사담당관-400)시행으로 이미 변경된 기준에 의거 적용중임.

나. 수수료 산출근거 시스템의 변경

- 기존의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은 당초 1997년 8월 25일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9[첨부자료 참조]를 준용하다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서울특별시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 중이었음. 즉, 심의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응찰업체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었음.
- 이번 개정조례(안)은 [표 4]와 같이 실제 응찰하는 업체의 수가 많지 아니 하여 기존의 분류방식이 실효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고, 오히려 공사의 규모 즉 공사금액에 따라 관련 설계도서의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근거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심의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실시설계 수수료의 금액의 적정성

- 기본설계에 비해 실시설계가 검토해야 할 자료와 내용이 방대함에도 심의수수료는 적게 잡혀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이 필요함.
- 그러나 변경 전 실시설계적격심의는 기타심의로 분류되어 있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었던 점과 중요한 결정 즉, 설계 내용의 평가와 공사의 품질시방 평가 그리고 실시설계적격업체의 결정 등이 기본설계적격심의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한 수수료범위로 운영해 본 후 추후 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기타사항

- 그동안의 수수료 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9를 준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소요비용에 훨씬 못 미치게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임.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재정의 지원과는 별개로 심의신청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정확히 관련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간에 정확한 회계구분의 좋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